

의안번호	제 104 호
의결년월일	1999. . . (제 회)

서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년월일	1999. 8. 17.

서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4
----------	-----

제출년월일 : 1999. 8. 17.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 개정이유

○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의거 법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한 규정이 조례에 중복 규정되어 있거나, 법에 미근거한 규제사항등을 폐지하는 한편, 조례로 정한 규정중 적용이 불명확한 사항을 보완하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3개의 조례(서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서산시가축사육금지구역에 관한조례 서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로 분산 제정되어 있어 서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로 단일화(전문개정)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

□ 주요골자

○ 법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한 사항폐지 : 현 서산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2조(오수정화시설등의 설치 및 준공검사), 제3조(오수정화시설등의 관리), 제4조(정화조등의 청소), 제12조(허기조건), 제14조(영업자의 지도·감독) 현 서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9조(편의용품 비치 제공), 제10조(유지·관리기준), 제11조(관리대장비치), 제13조(시설점검)

○ 법에 미근거한 규제사항 폐지 : 현 서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7조(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등의 청소대행), 제11조(분뇨관련 영업허가), 제13조(허가제한), 현 서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4조(개선 명령), 제15조(개선명령의 이행기간등), 제16조(유료화장실승인), 제17조(준수사항), 제18조(과태료 부과정수)

○ 조례보완

-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분뇨등 관련 영업허가를 득한자는 당연히 관내 분뇨 수집·운반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였고, 분뇨등관련영업자의 의무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안 제2조).
- 공중화장실의 범위가 현 조례대로 할 경우 위법하다는 판단에 따라 공중화장실 범위 조정(안 제6조).
- 법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지정함에 있어 현 조례에 불명확한 구역이 있어(예 : 잠흥1통 일부, 예천1통 일부, 면소재지) 전부 제한지역은 상업지역으로 하고 일부제한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단일화함(안 제12조).
- 또한 일부제한지역에서의 허가절차등이 현 조례에 누락되어 있어 허가절차를 규정함(안 제14조).
-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에 대하여 조치명령의 대상등을 명확히 구분하는등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안 제15조).

○ 조례폐지 : 서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및 서산시가축사육금지구역에 관한조례를 폐지하고 필요 조항은 서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조례로 삼입 함.

□ 참고 관련자료

- 가. 근거법령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입법예고결과
- 마. 승인, 보고, 인가 등의 관련서류 : 위법한 조례제정사례 통보(기감 11250-871 : '99. 6. 16)

서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서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령” 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분뇨등의 처리

제2조(분뇨등의 수집·운반처리) ①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분뇨의 수집·운반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득한 분뇨등 관련영업자가 실시토록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 관련 영업자는 다음 각호 1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산시 행정구역내의 분뇨에 대하여만 주민의 요구에 의하여 수거할 수 있으며, 수거한 분뇨는 시장이 지정한 장소에 처리하여야 한다
2. 분뇨의 수거를 요청하는 민원신고가 있는 경우는 24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안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유선통지 포함)하여야 한다

3. 분뇨수거 및 정화조등의 청소를 실시한 때에는 실제 수거량 및 청소량에 따라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을 징수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수증 3매를 발행하여 1매는 민원인에게 교부하고, 1매는 분뇨관련 영업자가 3년간 보관하며, 1매는 시에 송부 하여야 한다
4. 정화조등이 시행규칙 제15조, 제18조, 제21조, 제30조의 규정에서 정한 설치 기준 또는 관리기준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분뇨등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분뇨 및 정화조등의 청소 실적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분뇨처리의무 제외지역) 법 제18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의무 제외지역은 별표 1과 같다.

제 3 장 분뇨수집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등

제4조(수수료의 부과·징수)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처리등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수거한 분뇨를 시에서 운영하는 분뇨처리장에 반입하지 않을 경우 수수료 중 처리비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5조(처리비 징수)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한 분뇨를 위생처리 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처리비를 징수한다.

1. 시장의 분뇨등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자
2. 시장의 정화조 청소업 허가를 받은자
3. 기타 시장이 처리장을 사용토록 인정 하는자

②시장은 수거한 분뇨를 반입 할 때마다 그 물량을 계량 확인하여 반입 대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하며, 반입 물량에 대한 처리비를 제1항 각호의 자가 다음달 10일 까지 납부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처리장 처리비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징수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받은자 중에서 전년도 반입 물량에 대한 처리비의 25 퍼센트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시에 예치한 경우에는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기일내 처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④시장은 제1항 각호 1에 해당되는 자가 처리장 처리비를 기일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분뇨의 처리장 반입을 중단할 수 있다.

제 4 장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제6조(공중화장실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의 화장실로 한다.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설치한 화장실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시장
3. 자연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4. 도시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5. 기타 시장이 공중화장실로 지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장실

제7조(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 ①공중화장실 설치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관계법에 공중화장실의 시설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시설기준 이외에 필요한 경우 신체장애자용 변기를 설치하거나 화단, 휴식시설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위탁관리) ①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기준) 시장은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 하기 위하여 법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의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기준이 별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0조(화장실 개방) ①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6조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 이외에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에는 개방화장실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분뇨 수집 또는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대납할 수 있다.

제 5 장 축산폐수처리 및 가축사육의 제한등

제11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비용부담등) ①시장은 법 제32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축산폐수처리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제12조(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①시장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이를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

②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은 별표 4와 같다.

제13조(사육의 제한) ①전부 제한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②일부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 하고자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농경용 및 농가 부업용의 소, 말, 양, 돼지, 사슴의 경우에는 1두 및 닭, 오리
의 경우에는 5수이하
2. 학교 및 시험 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수의사, 가축인공 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

제14조(허가 절차등) ①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사육장의 상태가 인근 주민에
게 환경오염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가축사육 허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고, 그 허가증을 교부 받은 자는 이
를 축사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가축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그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
과 악취 및 해충 등으로 인근 주민에게 위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가축사육 허가를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일정한 기
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치 아니한 경우에는 즉
시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5조(조치명령) ①시장은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함에 있
어 개선명령으로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만 이전명령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명령 대상은 법 또는 타법에 저촉이 없는 축산시
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료가 있을
경우에 한한다.

1. 지역주민의 건강상 위해
2. 상수원 수질에 현격한 오염 원인이 될 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전명령을 실시한 때에는 이전명령 실시후 1년 이내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처리시설(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 6 장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이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하나의 위반행위가 2이상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금액만을 부과한다.

제17조(강제징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8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 7 장 보 칙

제19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제20조(권한위임)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권한중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 및 벌칙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행정처분 및 벌칙적용에 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폐지 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산시공중화장실관리조례 및 서산시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는 각각 이를 폐지한다.

[별표 1]

분뇨처리의무 제외 지역(제3조 관련)

읍·면·동별	동·리별	비고
팔봉면	고파도리	고파도
지곡면	도성2리 도성3리	우도, 분점도 저도

[별표 2]

분뇨수집 수수료등 요약표(제4조 관련)

부과대상	부과기준		청소요금(원)	비고	
분뇨	18ℓ 당		계	170	
			수거료	170	
			처리비		
정화조 (오니,수거조내 청소 포함)	기본	0.75m'까지	계	8,870	
			청소료	8,870	
			처리비		
	초과	0.75m'초과 0.1m'마다	계	1,010	
			청소료	1,010	
			처리비		

[별표 3]

축산폐수 처리 수수료등 요약표(제11조 관련)

부과대상	부과기준		부과금액
축산폐수	1m ³ 당	계	9,440
		수수료	8,440
		처리비	1,000

[별표 4]

가축사육 제한지역(제12조 관련)

제한구분	제한구역	비고
전부제한지역	도시계획구역중 상업지역	
일부제한지역	도시계획구역중 주거지역	

(관공서 제출용)

정화조내부청소영수증											
영		등록번호				업		대표자			
업		상호				업태				업종	
자		주소				관리번호					
		정화조		주소							
		소유자		성명		(인)					
		수거일		수거차량번호		취급자				(인)	
		구분		기준		수거량		금액			
		기본요금									
		초과요금									
		계									
<p>위와 같이 정화조의 내부청소를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9</p> <p style="text-align: right;">서 산 시 장 귀하</p>											

(영업자 보관용)

정화조내부청소영수증											
영		등록번호				업		대표자			
업		상호				업태				업종	
자		주소				관리번호					
		정화조		주소							
		소유자		성명		(인)					
		수거일		수거차량번호		취급자				(인)	
		구분		기준		수거량		금액			
		기본요금									
		초과요금									
		계									
<p>위와 같이 정화조의 내부청소를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9</p> <p style="text-align: right;">귀하</p>											

(납부자 보관용)

정화조내부청소영수증											
영		등록번호				업		대표자			
업		상호				업태				업종	
자		주소				관리번호					
		정화조		주소							
		소유자		성명		(인)					
		수거일		수거차량번호		취급자				(인)	
		구분		기준		수거량		금액			
		기본요금									
		초과요금									
		계									
<p>위와 같이 정화조의 내부청소를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9</p> <p style="text-align: right;">귀하</p>											

(뒷면)

유 의 사 함

- 이 영수증은 다음 정화조 내부 청소시까지 보관하시고 청소시 임회하여 수거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소유하고 있는 정화조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년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 정화조 청소요금은 750ℓ까지 8,870원이고, 초과 100ℓ마다 1,010원이 가산됩니다. 서산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청소요금 산출 예 - 1,550ℓ 수거시

구분	기준	수거량	금액
기본요금	750ℓ까지 8,870원	750ℓ	8,870원
초과요금	100ℓ당 1,010원	800ℓ	8,080원
계		1,550ℓ	16,950원

- 초과요금은 초과 100ℓ마다 1,010원 이므로 8×1,010원으로 계산하여야 함.
- 의문사항이나 부당요금을 요구한 사례가 있으면 서산시청 환경보호과 (☎660-3336)로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하여 드리겠습니다.

[별지 제1호을 서식]

(관공서 제출용)

분노수거영수증									
영		등록번호		대표자		업종			
업		상호		주소		업태			
자		주 소		성명		(인)			
		주소		성명		(인)			
		분노		배출자		수거일		수거차량번호	
		배출자		성명		(인)		취급자	
		수거일		수거차량번호		취급자		(인)	
		구분		기준		수거량		금액	
		요금				l			
		청		구		액			
위와 같이 분노수거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99		서		산		시 장	
				199				귀 하	

(영업자 보관용)

분노수거영수증									
영		등록번호		대표자		업종			
업		상호		주소		업태			
자		주 소		성명		(인)			
		주소		성명		(인)			
		분노		배출자		수거일		수거차량번호	
		배출자		성명		(인)		취급자	
		수거일		수거차량번호		취급자		(인)	
		구분		기준		수거량		금액	
		요금				l			
		청		구		액			
위와 같이 분노수거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99						귀 하	

(납부자 보관용)

분노수거영수증									
영		등록번호		대표자		업종			
업		상호		주소		업태			
자		주 소		성명		(인)			
		주소		성명		(인)			
		분노		배출자		수거일		수거차량번호	
		배출자		성명		(인)		취급자	
		수거일		수거차량번호		취급자		(인)	
		구분		기준		수거량		금액	
		요금				l			
		청		구		액			
위와 같이 분노수거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99						귀 하	

(뒷면)

유 의 사 항

- 분뇨수거 요금은 18ℓ 당 170원입니다.
(서산시 오수분뇨및축산폐수관리조례제2조)
- ※수거요금 산출(예 1,000ℓ 수거시)
170원/18ℓ = 9.44원/ℓ
수거요금 : 9.44원 × 1,000ℓ = 9,440원

- 분뇨수거시 현장에 입회하시어 수거량을
확인후 청소수수료를 산정하여 지급하시

기

바랍니다.

- 외문사항이나 부당요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면 서산시 환경보호과(전화 660-3336)
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의껏 답하여 드리겠
습니다.

분뇨 등 관 리 대 장

연월일	수집처	수 집 운반량(m ³)	반입장소	처 리 량(m ³)					비 고	
				계	종말 처리	농지 환원	비료화	기타	분뇨	오니

[작성요령]

1. 관리대장은 변소에서 수거한 분뇨와 정화조 등의 청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를 구분하여 작성한다.
2. 반입장소는 분뇨수집·운반업 및 정화조청소업의 경우에는 분뇨처리시설등을 말하며, 재활용자는 재활용 처리장소를 기재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월 분뇨·정화조등의 청소 실적

19

발 신

수신 서 산 시 장

수집운반량	처 리 내 역 및 양					비 고	
분뇨(오니) (kl)	계	종말처리	농지환원	비료화	기타	분뇨	정화조 청소 오니

[별지 제5호 서식]

가 축 사 육 허가 증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육장소제지							
축사 및 가축사육두수							
구분 축종	축사			사육두수			비고
	부지면적	동수	건평	계	성축	자축	
허가기간							

서산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축사육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 산 시 장

과 대 료 수 납 부												
일련 번호	통지서 번호	통지서 호	과대료 처분 통지일	독촉장 발부일	납부기한		금액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대료 납부일	이의제기	
					당초	독촉					이의제기일	협의원통보일

서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융자금의 추천신청은 1세대1인으로 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u>제5조(융자추천신청)</u> ①(생략) ②<u>융자금의 추천신청은 1가구1인1회에 한하는 것으로 한다.</u></p>	<p><u>제5조(융자추천신청)</u> ①(현행과 같음) <삭제></p>	<p><u>제5조(융자추천신청)</u> ①(개정안과 같음) ②<u>융자금의 추천신청은 1세대1인으로 한다.</u></p>